

1. 개정이유

재난이 복잡·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고,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통제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통제단 운영기준(4단계) 단순화(안 제15조)

- 현행 4단계(대비, 대응1단계, 대응2단계, 대응3단계)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작동하여 재난 유형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
-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단계를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제단 운영과 대응단계를 분리하여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시·도별 대응단계 반영 근거 마련(신설안 제15조의2)

1)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

-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·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역량 강화하고자 함

2) 신속한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단계를 시·도별 자체기준으로 긴

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제 호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통제단의 운영기준)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(이하 “통제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1.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
2. 제2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자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동원 자원 및 활동을 통합지휘·조정·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난의 규모,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15조2(대응단계 발령기준) ①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

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5조(통제단의 운영기준)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(이하 “통제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</u> <u>1. 대비단계 :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.</u> <u>2. 대응1단계: 하나의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</u>	<u>제15조(통제단의 운영기준)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(이하 “통제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</u> <u>1.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</u> <u>2. 제2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자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동원 자원 및 활동을 통합지휘·조정·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</u> <u>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난의 규모,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 <u>제15조2(대응단계 발령기준)</u> <u>①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.</u> <u>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</u>

있다.

3. 대응2단계 : 둘 이상의 시·

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
상황이나 하나의 시·군·구
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
지역의 시·군·구긴급구조통
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
황에서 해당 시·군·구긴급
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
영하고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
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
면적으로 운영한다.

4. 대응3단계 : 둘 이상의 시·

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
황이나 하나의 시·군·구 또
는 시·도에서 재난이 발생하
였으나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
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
해당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을
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
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
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.

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
하는 바에 따른다.